현 장 설 명 서

1. 건　명 : 도심공항/공항타워 옥상바닥 보수공사 입찰

2.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9. 4. 17 (수)　14:00
   나. 장　소 : 6층 회의실(616호)

3. 현장 설명자
   주　　관 : 관리지원팀　차 장　전 현 주
   현장설명 : 시설관리팀　담 당　정 필 중

4. 공사기간 : 2019. 4. 24. ~ 2019. 6. 22 (60일간)

5. 입찰등록 장소 및 일시
   가. 등　록　　:　㈜아이마켓코리아(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삼성동빌딩 16층)
   나. 일　시　　:　2019. 4. 22(월)　12시까지

6. 입찰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19. 4. 22(월)　16:00
   나. 방　법　　:　auction.imarketkorea.com에 접속 후 전자입찰로 진행

7. 유의사항
   가. 본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주)“에서 배부하는 현장설명서, 입찰자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제반관련서류는 당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주) “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 또는 복제할 수 없다.(관련서류 : 이메일 개별송부)
   나. 현장설명서, 입찰자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설계도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시 문서로 질문하여야 하며, 본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주) “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8. 기　　타
   입찰일시 및 장소는 당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주) “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
사업자등록번호 : 120-81-02048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22(한국종합무역센터 단지내)
관리지원팀 전현주 차장 : 551 - 0840　F A X : 551 - 0803
시설관리팀 정필중 담당 : 551 - 0839　F A X : 551 - 0803

입 찰 자 유 의 서

입 찰 건 명 : 도심공항/공항타워 옥상바닥 보수공사

입 찰 일 시 : 2019. 4. 22(월) 16시

입 찰 방 법 : auction.imarketkorea.com 에 접속 후 전자입찰로 진행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주)

입 찰 자 유 의 서

이 유의서는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주식회사(이하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이라 한다)가 행하는 옥상 바닥 보수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1 장 입찰자 유의사항

제 1 조 (공사범위 및 계약기간)

(1) 공사범위는 공사시방서(이하 “설계도서“라 한다)에 의한다.

(2) 계약기간은 2019. 4. 24 ~ 2019. 6. 22(60일)로 한다. 단,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 될 경우,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2 조 (입찰등록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2018년 4월 22일(월) 12:00 까지 전자입찰 대행사인 ㈜아이마켓코리아(auction.imarketkorea.com)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당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 소정양식)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건축공사업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5. 입찰참가자를 위임할 경우 위임장 또는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법인) 각 1부
   * 위임장 제출시 입찰참가 업체의 임.직원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첨부
6. 공사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도장 필)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축물보수보강공사(단일공사) 4억 이상 실적
7. 국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입찰일 기준) 각 1부
8. 입찰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 주거래은행 금융거래확인서 1부 (부도,화의,회생,법정관리 확인용)
9. 입찰보증금 (세부사항 : 입찰자유의서 제3조 참조)

제 3 조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 시 입찰금액의 10/100이상의 입찰금액을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납부한다.

*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 사업자번호(120-81-02048)

1.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 “를 피보험자로하는 보증금액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
2. 해당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 4 조 (입찰보증금의 처리)

(1)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2)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당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에 귀속시킨다.

제 5 조 (입찰서의 작성)

입찰서는 당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에서 위임한 '(주)아이마켓코리아'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서상의 입찰금액은 제 1조의 입찰대상에 대한 공사 완료 후 인수도가격 기준으로 제세금(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총액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 6 조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1) 동시 투찰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의 총액최저가(제세금포함) 낙찰제.
예정가의 85% 이하로 낙찰될 경우 제3조의 방법으로 차액보증금(예가-낙찰가) 납부
(2) 낙찰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업체 대상으로 재입찰 실시하여 결정한다.
(3) 입찰은 3회까지 실시하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 최저가 응찰자 순으로 수의시담을 실시, 당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 예정가격 내에 합의되면 낙찰자로 선정.

제 7 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 또는 관계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자의 입찰.
5. 소정의 등록절차를 필하지 아니한 자가 제출한 입찰.

제 8 조 (부정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입찰참가를 제한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고의로 용역 등을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용역의 품질, 점검을 부정 불량하게 한 자.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거나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자.
4.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5. 당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시키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자.
6.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
8.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9.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10.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제 9 조 (입찰사항의 변경 등)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은 필요한 경우 입찰취소, 연기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변경사항을 입찰 전에 입찰 참가자에게 통지한다.

제 2 장 계 약 일 반 사 항

제 10 조 (계약의 체결)

(1) 낙찰자는 낙찰일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 1항의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단,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의 부득이한 형편에 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자에게 5일이내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 11 조 (계약이행보증금)

(1)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전까지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에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제3조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12 조 (내역서 제출)

(1) 낙찰자는 낙찰 후 3일 이내에 계약금액에 관한 산출근거를 명시한 내역서를제출 하여야 한다.

(2) 제 1항의 내역서는 수량 및 단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명시한 총괄 내역서를 제출하며 세부적인 산출내역서 작성지침은 추후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의 지시에 따른다.

(3)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은 계약체결 시에 제출된 내역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3 조 (대금지급)

계약자는 공사완료 후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의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되면 검수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의 사정에 의해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제 14 조 (작업현장대리인)

(1) 계약자는 본 용역의 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에게 통지한다.
(2)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 작업현장의 단속 및 작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한다.

제 15 조 (검수 및 검사)

(1) 각종 검사는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 또는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가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시검사는 작업진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계약자는 공사수행 도중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이 부실이라고 판단하여 재작업을 요청하는 경우 재작업을 하여야 하며 이를 사유로 추가비용을 요청할 수 없다.

제 3 장 기 타 사 항

제 16 조 (하도급 금지)

계약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단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 에서 인정한 전문 부분은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다.

제 17 조 (관계서류의 숙지)

입찰자는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에서 정한 현장설명서, 입찰자유의서, 작업지시서 및 관련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이해하고 납득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과 관련된 문서 등의 해석에 있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의 해석에 따른다.

제 18 조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내역서, 입찰자유의서, 기타계약에 관한 문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 19 조 (지체상금)

계약기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매 지체일 수마다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약금에서 공제한다.

제 20 조 (하자이행)

본 계약의 하자기간은 공사 완료 후 3년간 시행하며 하자이행보증금을 제3조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한다.

제 21 조 (준용규정)

본 유의서에 규정되지 않은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준용하고 관련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 22 조 (입찰조건의 변경)

관련서류상의 규격 또는 물량 등이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문의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 낙찰자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은 본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이 지정 또는 요청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라 야기되는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 23 조 (복제 또는 타인에의 대여)

본 입찰과 관련된 제반서류는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의 승인 없이 복제 또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제 24 조 (조문의 제목 해석)

본 유의서의 각 조문의 제목은 독립하여 효력이 없다.